

대 학 평 의 원 회 회 의 록

1. 회의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3일(월), 오후 3시 30분 / 대회의실(9동 2층)

2. 소집통보 : 2026년 7월 16일

3. 의원 참석 현황 : 의원정수 11명중 9명 참석

(참석의원 : 김한단, 최정호, 안창희, 최이철, 유강 // 불참의원 : 강민, 김민), (배석자 : 이철)

4. 회의안건 : 1) 2026학년도 제2차 학칙 개정(안) 심의
2) 202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자문
3)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추진(안) 심의

5. 회의내용

[간사]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회의가 진행될 것임을 말하다.

[의장]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개회 및 의결정족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말하다. 이어 오늘은 3개 안건으로 제1안 2026학년도 제2차 학칙개정(안) 심의와 제2안 202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자문, 제3안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추진(안) 심의임을 말하고 먼저 학칙 개정안 심의와 202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자문을 거친 후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의원들의 의견을 묻자 의원들 반대 없이 동의하여 주무 부서의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팀장] 2026학년도 제2차 학칙개정(안) 심의의 주요 내용은 학칙 제5조의2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을 환경안전보건학과(야) 3명, 보건의료행정학과(야)에서 6명을 감축하고 방사선학과(야)와 임상병리학과(야)에서 각각 3명씩 증원하여 전체적으로 284명에서 281명으로 3명을 감축하고자 하며, 학칙 제28조제2항에서 전과시 학과별 수요 조사 업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 제37조의 여러 학점 인정 조항들을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준하여 규정하고, 제4항에서 고등교육법 이외의 다른 국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점 인정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당초에 발송한 학칙신구조문대비표에 없던 내용이 교무위원회 심의과정 중 추가된 내용)하여 결과적으로 학칙 제37조에서는 학점 인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하고 이외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절차 등 상세 내용은 시행세칙과 별도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정리하고자 함임을 설명하다.

[의장] 각 의원께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의 장 김 :	기 2	부의장 한	한	평의원 유기	유기
------------	--------	----------	---	-----------	----

[최 의원] 학칙 제28조에서 수료 조사 부분을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다.

[교무팀장] 사실 현업에서 전과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전과를 받아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전과 보다는 편입학 비중을 더 높게 두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편입학 실적이 높으면 좋은데 사실 편입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학생들에게 확실한 기회를 제공하는 전과 등을 균형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전과 정원과 편입학 정원 계획의 가이드를 미리 제시하고 협의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답변하다.

[이 의원] 앞에서 설명하신 학칙시행세칙에 학점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완료되었는지 묻다.

[교무팀장]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학칙시행세칙은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되는 것이므로 추후에 최종결과를 안내 드리겠음을 답변하다.

[의 장] 학칙 제37조에서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니 "학생" 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부 문구의 정정을 요청하다.

[의 장] 이어 각 의원들께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다.

[각 의원] 이에 참석의원 전원 추가 질문이 없음을 표시하자 이? 의원이 제4항의 추가와 일부 문구 수정을 조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해서 가결할 것을 발의하다.

[의 장] 각 의원께 다른 의견이 있는지와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다.

[각 의원] 참석의원 전원 부의안건에 대해서 반대 없이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 장] 상정된 2026학년도 제2차 학칙개정(안)에 대한 심의 안건이 기존의 내용에 추가하여 제37조에 제4항을 추가하는 것을 승인하고 일부 문구의 수정을 조건으로 참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심의·의결됨을 선포하고, 다음 자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팀장] 다음 안건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진행될 교육과정 중 소단위전공과정의 개설과 개편, 가상학과와 신설, 주문식교육과정의 신설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단위전공 교육과정에서 임상CT전문가 과정과 조직병리 진단 분석과정의 개편과 물리치료학과 운동기반 재활 중재 과정의 개발이 있고, 가상학과는 AI 스포츠 헬스케어학과와 기능성디저트&커피브루잉학도가 부전공으로 신설 예정이고, 주문식 교육과정으로 임상병리학과 분자진단검사 실무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며 2026년 2학기 교양 교육과정 중 일부 교과목의 변경과 임상병리학과 주문식 1개 교과목의 변경이 있을 예정임을 설명하다.

[의 장] 각 의원께 질문이 있는지 묻다.

[최 의원] 가상학과가 학과명에서 보듯이 AI기반처럼 보이는데 교육분야에서는 AI내용이 보이질 않는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팀장] 가상학과를 개설하는데 참여 학과인 물리치료학과와 스포츠건강관리과와 여러 협의를 거쳤고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AI스포츠 코칭, AI스포츠 진단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의 목적 등에 반영이 미흡한 부분 있음을 답변하고 학과와 협의하여 교육과정의 최종 확정 전에 수정하겠음을 답변하다.

의 장 김	기 2	부의장 한	32	평의원 유	11
----------	--------	----------	----	----------	----

[의 장] 각 의원께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다.

[안 의원] 기능성디저트&커피브루잉학과는 내용을 보면 교육내용이 커피 분야가 비중이 높은 것 있는데 우리대학의 특성상 관련학과를 더 포함시켜 기능성 디저트를 더 활성화 하는 것은 어떤지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다.

[이 의원] 가상학과를 운영하려면 실습실 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었는지 질의하다

[정 의원] 요즈음 트렌드는 커피보다는 음료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하다.

[교무팀장] 기본적으로 모션핏재활과, AI 스포츠 헬스케어학과는 러닝센터와 보건안전교육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며, 기능성디저트&커피브루잉학과는 학교 내에 실습실이 부족하여 산업체 실습실을 이용할 예정임을 말하고, 안 의원과 정 의원에서 언급해 주신 부분들은 가상학과를 운영하면서 강의 계획 수정 등을 통해 반영하겠음을 답변하다.

[의 장] 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하였음을 말하고 각 의원께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다.

[각 의원] 이에 참석의원 전원 추가 질문이 없음을 표시하자 유 의원이 AI 스포츠 헬스케어학과 교육 목적 등의 수정을 조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해서 가결할 것을 발의하다.

[의 장] 각 의원께 다른 의견이 있는지와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다.

[각 의원] 참석의원 전원 부의안건에 대해서 반대 없이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 장] 금일 상정된 202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자문 안건이 AI 스포츠 헬스케어학과 교육 목표 등의 일부 수정을 조건으로 참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심의·의결됨을 선포하고, 다음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총무팀장] 제3안인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추진(안)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흥동 6층 전체를 를 운영하는 회사에 보증금 !, 월임대료 (VAT포함), 최초 계약기간 5년으로 임대하고자 함임을 설명하다.

[최 의원] 빌딩 전체적인 임대 현황에 대해 문의하다.

[총무팀장] 빌딩에서 학교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까지 인데 : 까지는 러닝센터와 평생교육원에서 사용 예정이고, 일부, 일부와 6층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월 약)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함을 답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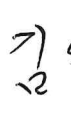
[의 장] 각 의원께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다.

[각 의원] 참석의원 전원 추가 질문이 없음을 표시하자 안 의원이 부의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발의하다.

[의 장] 각 의원께 다른 의견이 있는지와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다.

[각 의원] 이에 참석의원 전원 부의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 장]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추진(안) 심의 안건이 참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심의·의결됨을 선포하고 회의록 간서명은 김 : 의장과 한 : 부의장 및 유 평의원이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치다. (16시 27분 산회)

의 장 김		부의장 한		평의원 유경완	
----------	---	----------	---	------------	---

2026년 8월 3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의 장 김



부위원장 한



평의원 최



평의원 정



평의원 강

평의원 최



평의원 안



평의원 유



평의원 이



평의원 강

강

평의원 김